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호위함 사업추진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 무인기 사업 기능강화 인력 1명(5급 1명),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헬기사업부에 설치한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의 명칭을 사업단계 변화에 따라 소형무장헬기사업팀으로 변경하고,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과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결과를 반영하고,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한시조직”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을 “(소형무장헬기사업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을 각각 “소형무장헬기사업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을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한시정원)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지원 및 공동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405”를 “402”로 하고, 일반직 계 “404”를 “4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95”를 “39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28”을 각각 “72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660”을 “658”로 한다.

별표 4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방위사업청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제29조 관련)

1. 제29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장 <u>한시조직</u>	제7장 <u>한시조직 및 한시정원</u>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 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u>2023</u> <u>년 12월 31일</u> 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한국형기동헬기사 업팀을 둔다.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① ----- ----- ----- ----- <u>2025</u> <u>년 12월 31일</u>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u>소형무장헬기체계팀</u>)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 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u>2023</u> <u>년 12월 31일</u> 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u>소형무장헬기체계</u> <u>팀</u> 을 둔다.	제28조(<u>소형무장헬기사업팀</u>) ① - ----- ----- ----- ----- <u>2025</u> <u>년 12월 31일</u> ----- ----- <u>소형무장헬기사업팀</u> -----.
② <u>소형무장헬기체계팀</u> 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 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u>소형무장헬기사업팀</u> ----- ----- -----.
③ <u>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u> 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u>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u>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한시정원)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방위사업청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2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405</u>		<u>402</u>	-3	
	.		.		.		
	.		.		.		
일반직	계		<u>404</u>		<u>401</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95</u>		<u>392</u>	-3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728</u>	<u>726</u>	-2
일반직 계	<u>728</u>	<u>726</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60</u>	<u>658</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3